

학력인정 서류

가. 내국인

1) 현장 접수

- 응시자 전원 제출 서류(2018년도 예시)

제출 서류
1) 응시원서(소정 서식, 접수처에서 교부) 1부
2)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여권용 사진 3.5cm×4.5cm, 3개월 이내 촬영) 2매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⁰¹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 서식)<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급학교 진학 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 서식)<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3년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는 차세대나이스 제적증명서 제출 가능•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의 관리대상자는 정원 외 관리증명서(소정 서식)•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 서식)•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초졸 및 중졸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지참)•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자는 졸업(수료, 졸업 예정)증명서•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 과정 수료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4) 응시수수료: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음.
5)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하지는 않음)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 지참* 청소년증 발급 신청자는 접수증 또는 발급신청서 사본 등을 지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의 제출로서 3)의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성적통지서는 불가).

2) 온라인 접수

- 응시자 전원 제출 서류

01 최종학력증명서 발급

- 동사무소 팩스민원으로 발급 가능
- 행정실(출신교 무관 집근처 학교 가능)에서 발급 가능

제출 서류

1)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여권용 사진 3.5cm×4.5cm, 3개월 이내 촬영, 전자파일) 1매
* 100Kb 이하의 jpg, gi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함.

2)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 서식)
 - * 상급학교 진학 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 서식)
 - * 2003년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는 차세대나이스 제적증명서 제출 가능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의 관리대상자는 정원의 관리증명서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 서식)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초졸 및 중졸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증서 사본
- 합격과목의 시험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자는 졸업(수료, 졸업 예정)증명서
-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 과정 수료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 * 모든 서류는 jpg, gi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 상에서 “기타서류첨부”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응시수수료: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음.

※ 응시생은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여 접수해야 하며, 중복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000교육청의 예)

1. 본인의 공인인증서로만 온라인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원서접수는 원서교부 절차가 따로 없으며,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 접수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접수 보다 접수기간을 1일 단축 운영합니다.
3. 온라인 원서접수는 기간 중 24시간 접수하나, 첫날은 09:00부터,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합니다.
4.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소환표는 원서를 접수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사진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 숙지, 제출 서류 미비, 입력내용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6. 온라인 원서 접수 방법은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7.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는 제출 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000교육청의 예)

※ 공인인증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발급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발급.

3) 현장·온라인 접수 추가 제출 서류

- 과목면제 대상자

해당자	제출 서류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예정)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자	•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발급안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http://www.all.go.kr), 02-3780-9986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 편의 제공 대상자

대상자	편의 제공 내용	제출 서류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 지참)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소정 서식] •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상지지체 장애	대필	
청각 장애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 장애인 편의 제공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 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구비 서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함(단, 전산미 확인자는 별도 서류 첨부).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 서비스'를 2018년도에 시행하여 자택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함. 특수고사실 병행, 주거지 인근 고사장 선택 가능.

나. 귀국자

1) 귀국자 학력인정

- 초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중졸검정고시 응시자)
 -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중학교 졸업학력 인정(고졸검정고시 응시자)
 -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귀국자 학력인정 관련 제출 서류

-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 국내 최종학교 증명서(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 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 서류 원본
 -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 증명서
 -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⁰¹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우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영사확인⁰²: 외국의 문서가 우리 공문서와 동일하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주재 우리나라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주고 있음.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는 해당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국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정부기관 발행 문서(공문서), 공증문서(관련 사이트 주소)⁰³
- 귀국자 학력인정 제출 서류 간소화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4982, 2014.8.22.)
 - 교육부 홈페이지(정책) 초·중·고 교육 > 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같음.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확인)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 협약국 주재 우리나라 공관 홈페이지 확인방법 :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 상단메뉴 '재외공관' 클릭 → 해당 공관 홈페이지 이동 → 상단메뉴 '영사', 세부메뉴 '공증'

01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년 7월 14일에 발효된 아포스티유 협약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112개국이 협약에 가입돼 있다.

02 www.0404.go.kr

03 www.apostille.go.kr

- 향후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변조 발각시 해당 응시생의 검정고시 합격 취소

〈그림 3. 귀국자 학력증명서 준비 절차〉



다. 북한이탈학생

1) 학교급별 졸업 인정

- 소학교(인민학교) 4년(1975년 이전 인민학교 포함) 졸업자 초등학교 졸업 인정
 - (고등)중학교 3학년(1975년 이전 고등중학교 2학년 포함) 이상 이수자 → 중학교 졸업 인정
 - (고등)중학교 6학년(1975년 이전 고등중학교 5학년 포함) 이수자 또는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 인정
- ※ 학력심의위원회를 거침. 상급학교 진학이나 검정고시 지원 시 학력심의위원회에서 발급한 학력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함.

2) 신청자의 연령이 한국의 동학년 연령보다 적은 경우는 불인정

- 초등학교 졸업 인정: 만 12세 이상
- 중학교 졸업 인정: 만 15세 이상
- 고등학교 졸업 인정: 만 18세 이상

3)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권 위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에 의거, 일정한 수 이상의 북한이탈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장이 신청을 할 경우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음.
- 제1항의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학교는 북한이탈학생 재학생 수가 30명 이상으로 함.

4) 기타 경우

- 학력심의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

라. 다문화 학생

1) 학교급별 졸업 인정

- 해당 국가의 초등교육기관 이수자나 졸업자를 학력심의위원회를 거쳐 초등학교 졸업 인정
 - 해당 국가의 전기 중등교육기관 3개 학년 이상 이수자 또는 졸업자 → 중학교 졸업 인정
 - 해당 국가의 후기 중등교육기관 3개 학년 이상 이수자 또는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 인정
- ※ 학력심의위원회를 거침. 상급학교 진학이나 검정고시 지원 시 학력심의위원회에서 발급한 학력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함.

2) 신청자의 연령이 한국의 동 학년 연령보다 적은 경우는 불인정

- 초등학교 졸업 인정: 만 12세 이상
- 중학교 졸업 인정: 만 15세 이상
- 고등학교 졸업 인정: 만 18세 이상

3)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권 위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에 의거, 일정한 수 이상의 다문화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장이 신청을 할 경우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음.
-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 일정한 수(예: 10명) 이상의 다문화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청의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자체적으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음.

4) 기타 경우

- 학력심의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

참고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⁰⁵

가. 외국의 학교 교육과정 인정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 중학교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초·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외국에서 사이버 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 다만, 사이버 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외국의 검정고시의 인정 여부는 의견 수렴 및 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

나. 교육부의 외국학교 학력인정 방안(2015년 2월 2일)

1)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외 국 학 제	12	5-3-4-4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4-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취학/ 외국 국적자: 편입학)

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7호, 제8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외 국 학 제	12	5-3-4-4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4-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취학/ 외국 국적자: 편입학)

3)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외 국 학 제	12	5-3-4-4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4-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 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 국가의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해당 국가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상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검정고시 관련 학력인정에 관한 경우 교육감, 학교 입학에 관련된 경우 학교장)에서 최종 판단.